

형사법무 직렬 신설 등 직렬 개편에 따른 안내사항

「정부조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관련 법률이 '26. 10. 2.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일부터 기존 검찰 직렬 및 마약수사 직렬이 폐지되고 형사법무 직렬이 신설되었습니다.

《 직렬 개편 관련 근거 규정 》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2조(「공무원임용령」의 개정)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행정직군의 보호 직렬란 다음에 형사법무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검찰 직렬란 및 마약수사 직렬란을 각각 삭제한다.

형사법무	형사법무		형사법무 사무관	형사법무 주사	형사법무 주사보	형사법무 서기	형사법무 서기보
------	------	--	-------------	------------	-------------	------------	-------------

부칙 제4조(「공무원임용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별표 8, 별표 9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과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검찰 직렬에 응시한 합격자는 형사법무 직렬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형사법무 직렬 합격자는 이후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임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